

제10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03. 10. 24 (금) 10 : 00

2003년도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보고

거창군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희 의원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631억 3,330만원의 41.2%인 671억 7,400만원이 늘어난 2,303억 700만원으로서,

이 중 일반회계가 666억 700만원이 늘어난 2,123억 3,700만원, 특별회계가 5억 6,700만원이 늘어난 179억 6,900만원으로 편성된 내용에 대해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면,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동사업에 필요한 준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편성되었던 정상적 경비를 최대한 삭감하는 등,

어려운 재정 여건임에도 시급한 현안사업을 추진하고자 노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예산편성 기본지침이나 규정방향과 배치되는 것이 없는지와 기존 사업비중 삭감으로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또, 사업비 지원에 앞서, 타당성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뒷받침되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습디다만, 두 가지만 지적한다면, 일반회계 농정과 소관 중 오미자 가공공장 및 생산 기

반 조성 사업비 7억원을 계상하면서, 오미자 재배에 따른 농가소득과 오미자 예상 생산량,

그리고, 술 제조 필요 가능량에 대한 세밀한 분석도 없이, 예산을 반영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분석에 필요한 용역비도 지금까지 집행치 않고 있다가 삭감조치 되었으며,

동사업에 대해서는 자금집행에 앞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내용을 토대로 재배면적 확대와 그에 맞는 가공공장을 건립하도록 주문하였고,

또, 문화관광과 소관 중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 내 공공시설 설치 보조금 1억 6,000만원을 계상하면서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가 미흡하므로,

동사업 집행시 지원 목적과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집행하되 사업에 대한 지도와 감독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예산안을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산심사 결과 앞서 설명드린 토지구획 정리사업 지구내 공공시설 설치 보조금 1억 6,000만원은 과다 지원으로 보아 2,5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는 준수가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서 심사과정에서 토론 등을 거쳐 충분히 논의하여 의결한 만큼, 앞서 설명드린 두 가지 지적사항을 주문으로 채택하면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